

case 2

스테인리스강 튜브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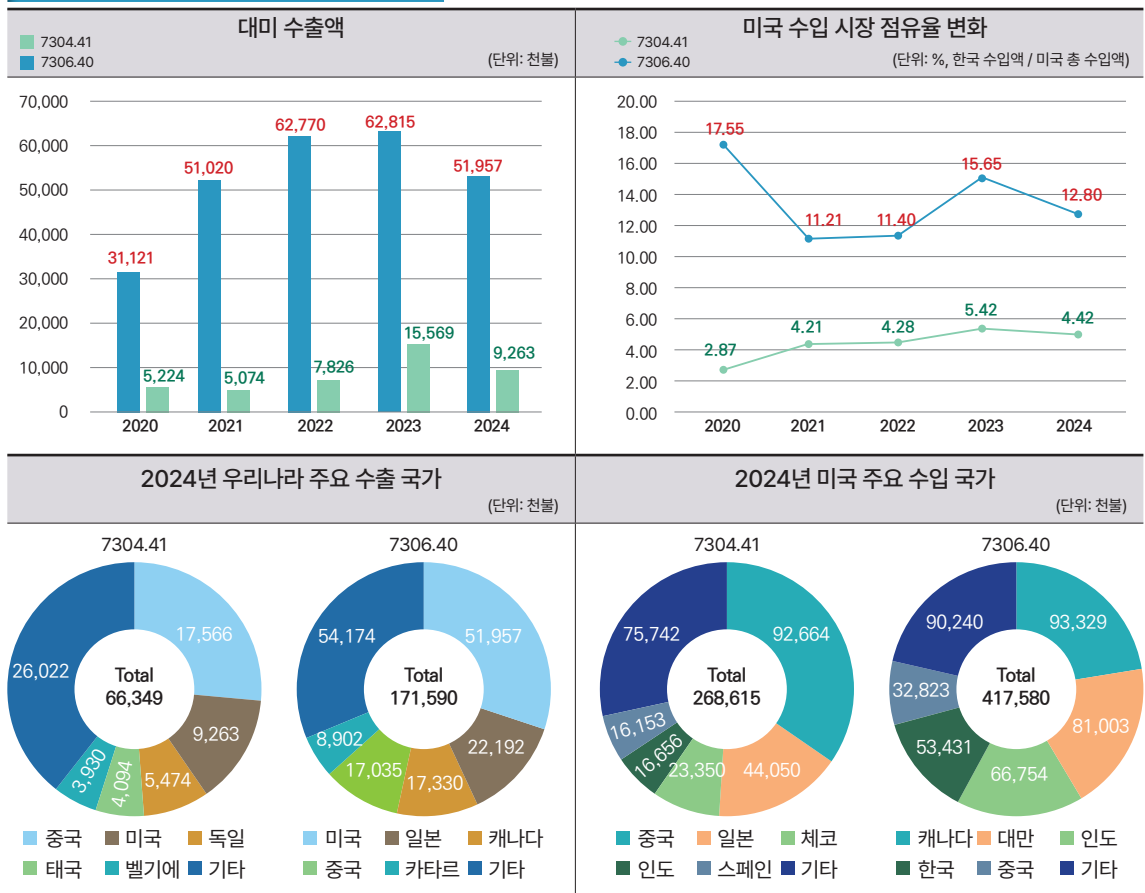
사례명	스테인리스강 튜브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
사례번호	NY N317203 (2021.02.16.)
사실관계	독일,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제조된 스테인리스강 튜브가 독일에서 전해연마 및 세척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
쟁점 및 판정	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스테인리스강 튜브는 독일에서의 공정이 수행되기 전에도 튜브였고,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튜브로 남아있으므로, 독일에서 수행된 전해연마 및 세척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독일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튜브가 제조된 국가 (독일, 한국 또는 미국)이며, 원산지가 독일이나 한국일 경우,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

HS Code	제7304.41호 및 제7306.4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0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 1.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. 제7304.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.41호의 것	

제7304.41 / 7306.40호 시장 정보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 례 명 [스테인리스강 튜브]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

사례번호 NY N317203 (2021.02.16.)

사실관계

요청자	Banner Industries of Northeast (N.E.), Inc. (대리인: Dorsey & Whitney)	
제품	제품명	• 스테인리스강 튜브 (Stainless Steel Tubes)
	용도	• 반도체 제조 공정용
	원재료 HS Code	• 7304.41.30 / 7304.41.60 / 7306.40.5040
	완제품 HS Code	• 7304.41.30 / 7304.41.60 / 7306.40.5040

제조공정



상세공정

1. 독일, 한국 또는 미국에서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조
2. 독일로 이동하여 전기화학 표면 처리(electro-polishing) 및 세척(cleaning) 수행
 - 이때,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동일
3. 미국으로 수입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- ✓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및 분석

1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☐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“원산지”란 해당 물품이 제조·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가 해당 물품에 대해 ‘실질적인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’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적용될 수 있음
- ☐ 제301조, 제232조 및 제2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시에도 이와 같은 실질적 변형 기준 적용

- ❖ 참고 판례: *Belcrest Linens v. United States*, 741 F.2d 1368 (1984)
-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H301619*, *HQ 563205*

- 실질적 변형의 요건: 물품의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확연한 변화

- 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CPA 267, C.A.D. 98 (1940)
- 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, 16 CIT 308 (1992), *aff'd*, 989 F. 2d 1201 (Fed. Cir. 1993)
- ❖ 참고 판례: *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*, 207 U.S. 556 (1908)
- 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Supp. 1026, *aff'd* 1 Fed. Cir. 21, 702 F.2d 1022 (1983)

- 기계 가공 작업이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, CBP는 가공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가공과 외형상 미관이나 경미한 처리를 위한 가공을 구분하여 판단함
- CBP는 연마(polishing), 유약 처리(enameling), 세척(cleaning)과 같은 장식 또는 마감 작업(embellishment and finishing operation)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업적 물품을 만들어내는 새롭고 광범위한 공정으로 보지 않음

-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554689*

- 사례** 금속 제품에 대해 미국에서 연마(polishing) 및 세척(cleaning) 작업을 수행
- 판정** 해당 공정은 외관 개선에 불과하므로 명칭·성질·용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결

-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071314*

- 사례** 금속 부품에 대해 미국에서 에나멜 도장(enameling) 등 마감 작업을 수행
- 판정** 마감 작업은 외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그 기능은 동일하므로 본질적 변형이 아님

판정 결과

- ☐ 스테인리스강 튜브는 독일에서의 공정이 수행되기 전에도 튜브였고, 미국으로 수입된 이 후에도 여전히 튜브로 남아있으므로, 독일에서의 전해연마 및 세척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

2

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검토

- ☐ 『대통령 포고령(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)』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

판정 결과

☐ 해당 제품(HTSUS 7304.41.30, 7304.41.60, 7306.40.5040)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 추가 관세 또는 쿼터(HTSUS Chapter 99에 포함된 별도 세번 해당) 대상일 수 있으며, 수입 시 Chapter 72,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(추가 관세 분류)도 함께 신고해야 함

결론

- ✓ 독일에서 수행된 전해연마 및 세정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원산지는 튜브가 제조된 국가(독일, 한국 또는 미국)로 결정됨
- ✓ 해당 튜브가 한국 또는 독일에서 제조된 경우, 미국 수입 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될 수 있음

III 시사점

- CBP는 일반적으로 연마, 유약 처리 등의 표면 처리 작업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변경 여부 또한 실질적 변형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
- 제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제 적용 여부는 원산지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CBP 사전심사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

IV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17203 (2021.02.1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17203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862&num=0&edition=prelim>
- Belcrest Linens v. United States (1984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309750/belcrest-linens-v-united-states/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 (1908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96747/anheuser-busch-brewing-assn-v-united-states/?q=Anheuser+Busch+Brewing+Association+v.+The+United+States+1908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